

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
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10. 2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62호로 2019년 10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특별회계 존속기한(2019.12.31)의 도래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지되고, 불안정한 세입(과태료수입)으로 인해 지속적, 체계적 무단투기 예방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미비해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: 2020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 예정

다. 협의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: 협의 대상 아님
- 2) 인권영향평가: 협의 대상 아님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협의 대상 아님
- 4) 규제심사: 협의 대상 아님

라. 입법예고(2019. 9. 11. ~ 10. 1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. 1. 1.부터 설치·운영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9.12.31.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폐지조례안임.
-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·운영하는 것으로, 과태료 수입 등 세입 부족 시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미비할 것으로 사료됨. 또한,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구에서만 특별회계를 운용 중으로 특별회계 폐지 및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3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를 적용받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은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인원 채용 및 관리,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, 무단투기 방지시설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.

제4조(관리·운영) 회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제5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」 제33조 [별표5]의 무단투기 과태료
2. 일반회계 전입금
3. 그 밖에 회계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

제6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

1.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
2.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비
3.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시설비(CCTV, 간판 등)
4. 그 밖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
제7조(일시차입)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

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잉여금의 처리)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10조(보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에 따른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.

2. 2014년도 징수결정분 중 2015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, 2015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.